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1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7 제2호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까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통상정책국장이,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는 통상협력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 제3호의 정원 21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2명, 5급

2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신통상질서전략실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u>2022년 3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둔다. ② ~ ⑩ (생략)	제51조(신통상질서전략실 및 정원) ① ----- ----- ----- ----- <u>2022년 12월 31일</u> ----- ----- -----.
제52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생략) ③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4월 30일까지</u>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④ ~ ⑥ (생략)	제52조(한시정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2022년 8월 31일</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